

제301회 강서구의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 3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미 래 · 복 지 위 원 회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4년 1월 31일
전문위원 권 오 숙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4 - 9
-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4년 1월 16일
- 라. 회부일자: 2024년 1월 22일

2. 제안이유

시장 이용고객 편의를 위한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신규 건립에 따라 해당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반현황

○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 규모		개관 예정월
		연면적	주차 대수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가로공원로80길55 (화곡동 366-59)	233.1㎡ (70.6평)	8면	'24년 2월

○ 위탁운영체 현황

대상기관명(대표자)	화곡중앙시장상인회(손구천)
설립일자 및 연혁	2005. 5. 10. 상인회 등록
주요사업	화곡중앙시장 활성화
인력현황	사무장 1명
재정부담능력	‘23년 수입 41,630천원(조합원 월 회비 상점당 35,000원 등)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 등	2021년도 강서구청 지방보조금사업 완료(시설현대화,경영현대화) 2022년도 강서구청 지방보조금사업 완료(시설현대화,경영현대화) 2023년 강서구청 지방보조금사업 완료(시설현대화,경영현대화)

나. 위탁의 필요성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요 시설물 등의 위탁운영이 가능함
-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은 방문 고객의 서비스 요구에 신속하게 응대하고 책임 경영과 시설물 안전관리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화곡중앙시장 상인조직에 위탁하여 직접 운영하게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음

다.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24. 2. 13. ~ 2029. 2. 12. (5년)
-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 위탁사무 내용 :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운영 및 관리 전반 등
- 수탁자 선정 :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 위원회’ 심의 의결 (2024. 1. 12.) [붙임 2 참조]

라. 추진일정

- 2024. 1월 :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개최 및 민간위탁 의회 동의
- 2024. 2월 : 민간위탁 계약 체결 및 주차장 운영 개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 및 제19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9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 및 제13조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4조[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48호]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화곡중앙시장¹⁾」 주차장 신규 건립에 따라, 해당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1) 화곡중앙시장 현황

시장명	상인대표	소재지	개설년도	대지면적	점포수
화곡중앙시장	손구천	강서구 월정로 30길	1979년	5,122㎡	78개

※ 시설현대화사업 지원현황(2005 ~ 2021년): 2,884,245천원

- 아케이드설치, CCTV설치 및 고객지원센터 보수 등

-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운영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기준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상인조직에게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음

- 고객주차장은 시장 방문고객의 서비스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등의 책임의식 확보가 중요하므로, 시장 이용고객과 인접한 전통시장 상인조직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 향후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을 통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경쟁력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 2**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 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9조**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구청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

제4조(시장의 주요시설과 편의시설의 관리)

② 구청장은 구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제13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히트는 한 차례에 한하며,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4.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4조(주차장 시설 위탁운영)

제24조(주차장 시설 위탁운영)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시설을 「주차장법」에 따라 제정한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전통시장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인회, 시장관리자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수익이 발생하는 주차장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입과 지출 추계 등을 통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운영 민간 위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상인 조직에서 부담하여 별도의 지원 예산이 없음
4. **작성자** : 미래경제국 지역경제과 (담당: 행정7급 이소현 / 2600-6277)

참고

고객주차장 위치도

위치도

